

# 「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 발굴·지원 사업」 예비 기업·기관 모집공고

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(설치기관: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)에서는 지역내 기업·기관들의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함께 직업 능력개발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예비 기업·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·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5년 09월 16일

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

## 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명: 「2026년 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 발굴·지원」

나. 사업기간: 2025년 9월 ~2026년 8월

다. 사업목적:

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(Best HRD)\*의 획득을 희망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후보기업·기관으로 선정하고 인적자원개발·관리 분야 컨설팅 지원

\*공공·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·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게 고용노동부, 교육부,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, 정부 4개부처가 인증을 부여

라. 선정주체: 세종RSC 정기위원회 심의·의결을 통해 후보기업·기관 선정

마. 추진절차:

- 예비기업·기관 공모·접수 → 심사(서류현장) → 후보기업·기관 발굴(세종RSC·심사위원회) → 후보기업기관 검토(실무협의회) → 후보기업기관 선정(정기위원회) 및 안내(세종RSC)

## 2. 신청 접수

가. 신청대상

- (공공부문) 세종 내 「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」 제19조 제1~4호에 따른 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공공부문\*\* 기업·법인 또는 단체 등

\*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연구기관·연구회, 지방교육행정기관(시·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), 학교, 국립대병원

\*\* 기획재정부장관 지정·고시 공공기관, 행정안전부장관 지정·고시 지방 출자·출연기관, 지방공기업(지방공기업법), 기타 관계 부처 협의 확정기관

- (민간부문) 세종 내 「고용보험법」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

① (중소기업)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

※ 단,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해당 사업체

나. 신청방법

- (제출기간) 2025.09.29.(월) ~ 10.17.(금) 17:00
- (제출서류) 붙임 참고
- (접 수 처)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인적자원팀(044-251-3256)  
이메일접수 [kyungju@sjepa.or.kr](mailto:kyungju@sjepa.or.kr)  
홈페이지 주소 <http://sjepa.or.kr>

### 3. 선정 절차

#### 가. 심사기준

- BEST HRD 심사기준표 적용 ※ 상세 사항은 붙임의 심사표 참조

#### 나. 선정기준

- 총 1,000점 만점 중 500점 이상 취득

#### 다. 심사절차

- 1차(서류심사) : 심사기준 항목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평균 반영,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현장심사 대상 선정
- 2차(현장심사) :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대하여 심사위원\*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등 심사(기준점수 이상인 재인증 기관 및 기업 제외)

### 4. 향후 일정

- (예비 기업·기관 서류심사) '25.10.20.(월) ~ '25.10.24.(금)
- (예비 기업·기관 현장심사) '25.10.27.(월) ~ '25.11.5.(수)
- (후보기업·기관 선정) 실무협의회(선정 검토)와 정기위원회(심의·의결)를 통해 최종 선정 확정('25.11.12.(수)예정)
- (결과 통보) 정기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10일 이내 후보기업·기관에 공문 발송

### 5. 붙임자료

- 붙임 1. 「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 발굴·지원 사업」 예비 기업 신청서
- 붙임 2. 「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 발굴·지원 사업」 예비 기관 신청서
- 붙임 3. 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 인증\_심사기준 및 현황 설명서(예비 기업)
- 붙임 4. 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 인증\_심사기준 및 현황 설명서(예비 기관)